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3년 4월 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술규제서비스과 정기원 과장, 김용득 연구사(509-7255)

'외국의 강제 시험·인증(TBT) 문제, 해결사례 늘어

- 인도, 인도네시아 안전인증 시행연기 등 기술규제 애로 해소 -

1 [인도] 2013년 4월부터 시행하려던 TV, 모니터, 셋톱박스, 컴퓨터, 전자레인지 등 15개 전자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를 2013년 7월로 연기되어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

○ **(애로 사항)** 인도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은 부족하고 인증을 받으려는 우리 제품은 많다보니, 우리 기업들이 시행일까지 수출제품의 시험을 마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음

○ **(대응 활동)** 올해 초 **서면으로 시행연기를 요청**하고 2월에는 **해당 부처를 방문**, 3월에는 **WTO TBT 위원회에서 이의제기 및 협의** 추진

○ **(대응 결과) 2013년 7월까지 시행을 연기**하고 **10월까지 경과조치를 설정**한다고 발표하여 **시급한 애로사항이 해소됨**

2 [인니, 말련]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전기안전 규제가 인도네시아는 2013년 4월에서 2013년 11월로, 말레이시아는 2013년 1월에서 2014년 1월로 각각 연기되어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

○ **(애로 사항)** 새로운 규제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데 최소 6개월이 소요되나, 준비기간이 2개월에 불과

○ **(대응 활동)** 해당 국가에 **규제 시행을 6개월 이상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초에 해당 국가를 찾아가 협상 추진**

○ **(대응 결과) 인도네시아는 2013년 11월부터, 말레이시아는 2014년 1월부터 규제를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와 애로사항이 해소됨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전자제품 안전인증 시행이 연기**되어 **수출기업에게 부담이 되어 왔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규제 시행시기가 촉박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시험·인증을 받을 시간이 부족함을 호소하여**, 정부는 해당 국가에 **제도 시행 연기를 요청**하였고,

○ 이에 **인도의 전자제품 안전인증은 2013년 4월에서 2013년 7월로 연기**되고, **인도네시아는 2013년 4월에서 2013년 11월**로, **말레이시아는 2013년 1월에서 2014년 1월**로 각각 **연기**되었다.

□ **인도**는 지난해 10월에 **TV, 모니터, 셋톱박스, 컴퓨터, 전자레인지 등 15개 전자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제도를 2013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알려왔으나,

○ 인도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은 부족하고 인증을 받으려는 우리 제품은 많다보니, 우리 기업들이 시행일까지 수출제품의 시험을 마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 기술표준원은 **올해 초 서면으로 동 제도의 문제점과 시행연기를 요청**하였고, 2월에는 인도 주재 상무관과 함께 **해당 부처를 방문**하였으며, **3월에는 WTO TBT 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동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도측 대표단과 협상**을 추진하였다.

○ **인도는 2013년 7월까지 시행을 연기하고 10월까지 경과조치를 설정**하여, **7월 이전에 시험을 마치고 인증을 신청한 경우 제도를 유예**한다고 발표하여 수출기업의 발등의 불은 끈 상태이다.

□ 이와 유사하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지난해 10월에 **2013년부터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전기안전 규제를 시행**한다고 통보하였다.

○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 수출하려면 최소한 6개월이 걸리는데, 준비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측에 **규제 시행을 6개월 이상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초에 해당 국가를 찾아가 협상을 벌였다.**

○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2013년 11월부터, 말레이시아는 2014년 1월부터 규제를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와 **기업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술표준원은 **최근 개발도상국들까지도 시험·인증 등 무역기술 장벽이 급증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시험·인증 애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무역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장벽이 되는 각국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말함

* 무역에 영향이 있고, 2012년에 신규로 도입한 개도국의 기술규제는 1,242건으로 전체(1,550건)의 80%를 차지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서비스과 김용득 연구사(☎ 02-509-72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인도 전자제품 전기안전규제 개요 및 대응경과

❑ 인도 전자제품 안전규제 개요

인도 전자제품 전기안전 규제

- 관련규정 :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Requirements for Compulsory Registration) Order(2012)
- 관련부처 :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MCIT) (department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 목 적 : 전기 안전
- 대상제품 : TV,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노트북, 셋톱박스 등 15개 제품군
- 규제내용 : 국제표준(IEC)과 부합화된 인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라벨을 표시하고 BIS에 등록해야 하며, 2년마다 사후관리 실시
- 시행시기 : 2013년 4월 3일
- 수출현황 : 다수의 기업에서 88백만불 수출('11년)

❑ 규제내용 및 대응경과

○ 통보일자 : 2012. 10. 19(G/TBT/N/IND/44)

* 동 규제의 시행을 담은 고시를 '12년 9월에 관보 게재

○ 아국 의견 회신 : 2013. 1. 25

○ 인도 규제당국 방문 : 2013. 2. 20

○ WTO TBT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 제기 : 2013. 3. 6

○ 인도에서 규제시행연기를 발표 : 2013. 3. 20

❑ 안전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

순번	제품	인도 표준	표준명
1	전자게임기(비디오)	IS 616:2010	Audio,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Safety Requirement
2	랩탑/노트북/태블릿PC	IS 13252:2010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safety-General Requirement
3	PDP/LCD/LED TV (32" 이상 화면 사이즈)	IS 616:2010	Audio,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Safety Requirement
4	200W이상의 증폭기에 장착된 광 디스크 플레이어	IS 616:2010	Audio,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Safety Requirement
5	전자 레인지	IS 302-2-25:1994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Part 2 Particular requirements: Section 25 Microwave ovens
6	디스플레이, 비디오 모니터 (32" 이상 화면 사이즈)	IS 13252:2010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safety-General Requirement
7	프린터, 플로터	IS 13252:2010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safety-General Requirement
8	스캐너	IS 13252:2010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safety-General Requirement
9	무선 키보드	IS 13252:2010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safety-General Requirement
10	자동 응답기	IS 13252:2010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safety-General Requirement
11	2000W이상의 증폭기 (amplifier)	IS 616:2010	Audio,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Safety Requirement
12	200W이상의 전자음향시스템	IS 616:2010	Audio,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Safety Requirement
13	주전원이 달린 전자시계	IS 302-2:26: 1994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Part 2 Particular requirements: Section 26 Clocks
14	셋톱박스	IS 13252:2010	Audio,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Safety Requirement
15	자동 자료 처리 기계(컴퓨터)	IS 13252:2010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safety-General Requirement

❑ 적용대상 품목별 수출규모(2011년)

품목	HS CODE	**총 수출액** (천불)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자동처리기계	8471	3,312,017	30,470
휴대용 컴퓨터	8471.30	1,255,520	14,425
컴퓨터	8471.41	21,904	172
입력장치/출력장치 (키보드, 스캐너, 프린터 등)	8471.60	170,660	1,302
전자레인지	8516.50	84,029	557
TV	8525	703,615	10,760
모니터	8528.41	8,760	2
	8528.49	3,130	370
	8528.51	1,723,506	7,466
	8528.59	195,342	6,003
	소계	1,930,738	13,841
셋톱박스	8528.71	582,783	33,051
비디오 게임용구	9504.10	18,438	-
총계		6,631,620	88,679

참고 2 인도네시아 가전제품 전기안전규제 개요 및 대응경과

❑ 인도네시아 SNI 인증 개요

인도네시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SNI 인증 개요

- 관련부처 : Directorate General of High Technology-Based Superior Industry, Ministry of Industry
- 목 적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에 대한 안전 확보
- 규제내용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의 안전에 대한 SNI 표준에 부합하고, 품질경영시스템(SNI ISO 9001) 이행
- 시행시기 : 2013. 4. 22
- 수출현황('11년 기준) : LG, 삼성 등 13개 회사 1.5천만불

 * 에어컨(1.6백만불), 냉장고(10.7백만불), 세탁기(3.1백만불)

❑ 규제개요 및 대응경과

○ (규제 내용) 인도네시아에서 생산, 수입, 유통, 판매되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는 SNI 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을 이행하여야 함

○ 통보일자 : 2012. 10. 22(G/TBT/N/IDN/66)

○ 의견마감일 : 2012. 12. 20(통보 후 2개월)

○ 채택예정일 : 2012. 11. 22

 * 채택예정일이 의견마감일보다 1개월 정도 빠름

○ 시행예정일 : 2013. 4. 22(통보 후 6개월)

○ 시행유예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연기를 요청 : 2012. 11

○ 인도네시아 규제당국 방문 : 2013. 1

○ 인도네시아에서 시행계획 회신 : 2013. 2

참고 3 말레이시아 에어컨 전기안전규제 개요 및 대응경과

❑ 말레이시아 에어컨 SIRIM 인증 개요

말레이시아 에어컨 SIRIM 인증 개요

- 관련부처 : 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SIRIM)
- 관련법령 : 전기공급법(1990), 전기규정(1994)
- 목 적 : 에어컨에 대한 전기안전 확보
- 규제내용 : IEC의 에어컨 안전표준에 부합 여부를 제3자인 SIRIM 인증을 받은 후 SIRIM 인증마크 부착
- 시행시기 : 2013. 1. 1
- 수출현황 : LG, 삼성 등에서 500만불 수출('12. 9 기준)

❑ 대응경과

○ SIRIM에 에어컨 인증시행을 3개월 연기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13년 4월 이후에 시행할 것을 요청('12. 10)

○ '12년 제3차 WTO TBT 위원회에서 양자회의 ('12. 11)

○ 말레이시아 TBT 질의처(SIRIM)에 재차 회신을 요청('1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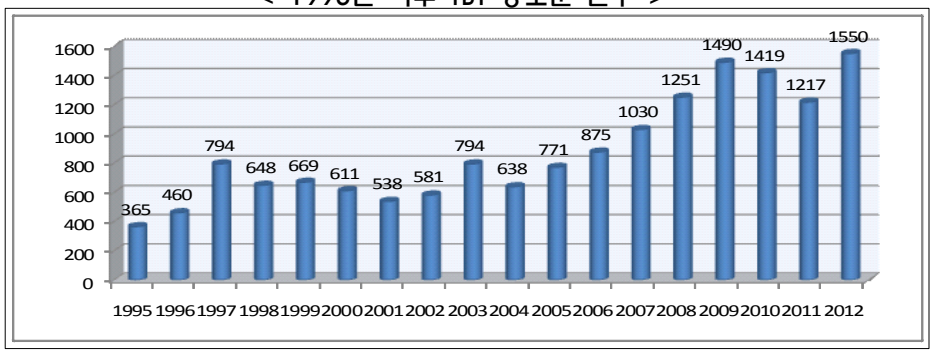
○ 말레이시아 TBT 질의처에서 동 규제의 시행이 '1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통보('13. 1. 22)

참고 4 무역기술장벽 통계

□ WTO TBT 통보문 현황

연도 / 대응활동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TBT통보문	365	460	794	648	669	611	538	581	794	638	771	875	1,030	1,251	1,490	1,419	1,217	1,550
우리나라 통보문	13	9	14	8	21	27	27	19	19	16	19	29	37	33	57	45	47	77

< 1995년 이후 TBT 통보문 건수 >



□ WTO TBT 위원회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건수]

연도 / 내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위원회 전체현안	27	24	36	46	58	75	61	76	90
아국제기 건수	2	1	4	2	7	8	6	10	9
아국대상 건수	2	2	2	2	3	4	3	7	8

□ 선진국-개도국 TBT 통보 현황

[단위 : 건(비율)]

연도 /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선진국	287(79%)	322(70%)	567(71%)	387(60%)	365(54%)	370(61%)	249(46%)	257(44%)	254(32%)
개도국	77(21%)	139(30%)	232(29%)	257(40%)	308(46%)	238(39%)	298(54%)	328(56%)	543(68%)
연도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선진국	230(36%)	270(35%)	293(34%)	358(34%)	408(32%)	278(19%)	281(20%)	262(22%)	310(20%)
개도국	410(64%)	492(65%)	579(66%)	680(66%)	851(68%)	1,217(81%)	1,147(80%)	953(78%)	1,250(80%)

참고 5 무역기술장벽 개요

□ 해외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현황

○ **(무역기술장벽)** 각국에서 안전, 환경 등을 목적을 실시하고 있으나, **무역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기술규제, 표준, 인증**

* (TBT 유형)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제품 차별, 국제표준과 다른 강제기준, 모호한 인증제도 운영 및 기술기준

○ **(규제 현황)** 무역에 심각한 영향이 있는 기술규제가 매년 1,000여건 이상 통보되고 있어, **각국의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

* '12년 자국 규제가 무역에 심각한 영향이 있어, WTO에 통보한 TBT는 1,560건으로 **미국(104건), EU(78건), 중국(76건), 일본(34건)**의 **TBT(292건)**가 **전체의 18%** 차지

○ **(문제점)** 부당한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해 **해당국에 대한 수출 불가, 인증획득 등에 따른 시간, 비용이 증가**

* 미국·EU·일본 등의 비관세장벽은 업종에 따라 6~30% 관세율에 상당(Ecorys, 2009)

* 중소기업들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 능력, 인력 부족 등으로 수출국가의 무역기술장벽에 직면하면 대부분 수출을 포기함

□ 무역기술장벽 대응활동

○ **해외 기술규제를 입안 단계에서 입수, 분석**한 후 **양자(FTA)·다자(WTO/ TBT) 협상** 등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의 제거 또는 완화**

* 미국, EU 등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무역기술장벽 방지를 위한 FTA/TBT 협정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대응 가능

-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된 해외 기술규제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아, 입안단계에서 규제 분석 및 우리 의견 반영이 필요

□ 기대효과

○ 무역기술장벽 해소로 인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감소 등으로** 우리 제품의 경쟁력 제고

○ 품목별 기술규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기업에 전파하여 **기업들이 해외 기술규제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참고 6 무역기술장벽 대응사례

미 국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규정 강화 (성공사례)

○ **(개요)** 미 교통부는 휴대폰 등 휴대용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소형 리튬이온 전지**를 **항공운송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항공 운송수량 제한, 포장 강화, 보관위치 제한 등의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10. 1월)

○ **(예상 피해)** 동 규제 시행시 우리 휴대폰 제조업체는 **휴대폰 Unit 당 최대 $3의 운송비 증가 예상** 및 **신제품 출하 지연** 불가피

*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는 소형 전자제품 對미 수출액은 **152억불** 규모('09년)
* 규제 시행 시 약 3000억원 이상이 운송비로 추가 소요

○ **(대응 활동) WTO TBT 위원회 이의제기(7회), 양자협의(5회)** 등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과 일치화, 과도한 규제 철회를 미국에 요구

○ 미국은 우리측 의견을 받아들여 **완화된 규제안을 발표**('12. 4월)

-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어, **무역기술장벽 해소**

EU 타이어 형식승인 및 연료효율성 라벨링 규정 (성공사례)

○ **(개요)** EU는 타이어 형식승인 및 연료효율성 라벨링 시행('12.11)을 통보함

*** 국내업계의 대EU 타이어 수출량(2011년도) : 8.2억$**

○ **(예상 피해)** 스터드 타이어(스터드 핀을 부착한 겨울철 빙설 노면용 타이어)는 동 규정의 적용예외 대상이나

- EU 측에서 장거리 운송 중 제품 손상 방지를 위해 핀을 제거한 **스터드 타이어에 대해 라벨 부착을 요구**

* 스터드 타이어 특성 상 라벨 획득이 쉽지 않아 **對EU 수출중단이 우려**

○ **(대응 활동) WTO TBT 위원회('12.3), 한-EU FTA/ TBT 위원회('12.4) 이의제기** 등을 통해, EU로부터 핀이 제거된 스터드 타이어도 적용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음 ☞ **무역기술장벽 해소**